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설 명 자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나. 제 안 사 유

-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89호로 도.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정기시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로 개정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키 위함.

다. 주 요 내 용

-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자구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의 너비를 면적으로 제21조 제1항의 과태료를 면탈한 사용료의 5배 에서를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수반한 사항으로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7. 첨 부 :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45
----------	---------

제출년월일 : 1997. 4. 10.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일부내용이 조례의 취지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목적

-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분류와 등급구분

- 시장은 그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다. 사용료

-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3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중 "너비"를 "면적"으로 한다.

제6조 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조례로"를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수수료 및 유료시설운영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허가기간안에"를 "허가기간내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동"을 "변동"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전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전조"를 "제17조"로 하고,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을 "원상회복"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면탈한 사용료의 5배"를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로 한다.

제22조중 "군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개설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 - - - - 제16조 -</p>
<p>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② (생략) ③ 전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 - - - - - - - - -</p>
<p>제5조 (허가) ① (생략) 1. (생략)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u>너비</u>, 사용개소수 3. (생략)</p>	<p>제5조 (허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u>면적</u>, - - - -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 (사용료) ①~④ (생략) ⑤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자는 1달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생략)</p>	<p>제6조 (사용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 (보증금) ① (생략) ② 전항의 보증금액과 그 징수방법 또는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p>	<p>제7조 (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 - - - - -</p>

현행	개정
<p>규칙으로 정한다.</p>	<p>-----</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분담금) ① (생략)</p> <p>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u>조례</u>로 정한다.</p>	<p>제8조(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규칙</u>으로 -----</p>
<p>제10조(공공요금) ①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에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u>폐기물처리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인건비</u>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u>전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처리</u>가 2명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10조(공공요금) ① -----</p> <p>-----</p> <p>----- <u>폐기물처리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등</u> -----</p> <p>-----</p> <p>② <u>제1항</u> -----</p> <p>-----</p> <p>-----</p> <p>-----</p> <p>-----</p>
<p>제12조(배상책임)</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u>전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u>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p> <p>③ <u>전항의 배상금액</u>은 군수가 이를 정하고 사용자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12조(배상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u> -----</p> <p>-----</p> <p>-----</p> <p>③ <u>제2항</u> -----</p> <p>-----</p> <p>-----</p>
<p>제13조(신고) ① 사용자가 연 7일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때 또는 허가</p>	<p>제13조(신고) ① -----</p> <p>----- 허가</p>

현행	개정
<p>기간안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뜻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의 주소에 이동이 있을 때 또는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사용권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기간내에 - - - - -</p> <p>- - - - -</p> <p>- - - - - .</p> <p>② - - - - - 변동 - - - - -</p> <p>- - - - -</p> <p>- - - - -</p> <p>- - - - - .</p>
<p>제14조 (일시사용)</p> <p>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일시 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p>	<p>제14조 (일시사용)</p> <p>① 제13조 - - - - -</p> <p>- - - - -</p> <p>- - - - - .</p> <p>② 제1항 - - - - -</p> <p>- - - - -</p> <p>- - - - - .</p>
<p>제16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p> <p>① (생략)</p> <p>② 전항의 유해물 또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금지 된것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제16조 (인체유해물 및 위험물 취급금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p>
<p>제17조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7조 (사용제한) ① - - - - -</p> <p>- - - - -</p> <p>- - - - - 사용</p> <p>허가 취소를 할 수 - - - .</p>

현행	개정
<p>1~8 (생략)</p> <p>② <u>전항</u>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18조 (원상회복)</p> <p>① <u>전조</u>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취소한 때에는 <u>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u>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u>전항</u>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p> <p>제21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u>면탈한 사용료의 5배</u>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p> <p>② (생략)</p> <p>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군 규칙</u>으로 정한다.</p>	<p>1~8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u> - - - - -</p> <p>제18조 (원상회복)</p> <p>① <u>제17조</u> - - - - - - - - - - <u>원상회복</u> - - - - -</p> <p>② - - - - - <u>제1항</u> - - - - -</p> <p>제21조 (과태료) ① - - - - - - - - - - - - <u>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의 5배</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 (시행규칙) - - - - - - - - - - <u>규칙</u> - - - - -</p>